

대구지방법원 2024. 4. 17 선고 2023가단48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소진

변 론 종 결 2024. 3. 20.

판 결 선 고 2024. 4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2. 4. 5. 체결된 매매예약계약과 2022. 12.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

영천등기소 2022. 12. 15. 접수 제28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예비적으로,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4. 5. 체결된 매매예약계약과 2022. 4.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
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2. 12. 15. 접수 제28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회사와 2016. 6. 16. 보증금액 4억 2,500만 원, 보증기간 2016. 6. 17.부터 2019. 6. 17.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(이하 'D은행'이라 한다)로부터 5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9. 6. 17.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, 그 후 위 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이 2022. 12. 17.로 연장되어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도 2022. 12. 17.로 연장되었다.

나. 원고는 소외 회사와 2017. 10. 16. 보증금액 8,500만 원 보증기간 2017. 10. 17.부터 2018. 10. 17.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(이하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,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8. 10. 17.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, 그 후 위 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이 2022. 10. 17.로 연장되어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도 2022. 10. 17.로 연장되었다(이하 소외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통틀어 '이 사건 대출금'이라 한다).

다.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. 4. 27. D은행에 485,470,185원을 소외 회사 대신 변제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8. 5. 14.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였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2022. 4. 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4. 5.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
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, 2022. 12. 15.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 위 가등기는 혼동으로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그 체결일이 2018. 5. 14.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그로부터 4년 7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22. 4. 6.

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2. 12.경 또는 2022. 4.경 체결되었음이 분명하다.

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후 2022. 12.경 또는 2022. 4.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3. 판단

가.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

피고가 2022. 4. 6.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22. 12. 15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.

그러나 을 제1 내지 4,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그 체결일이 2018. 5.

14.로 기재되어 있고,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 중 5,000만 원을 지급한 점, ②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‘이 사건 부동산의 D 주식회사 설정 건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외 회사가 말소하기로 한다’고 기재되어 있고, 소외 회사는 2018. 7. 16.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4,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, ③ 피고는 2018. 7. 16.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1억 4,000만 원을 지급하였고, 2018. 7. 26. 소외 회사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, ④ 피고와 소외 회사

사이에 위 매매대금 거래내역 외에 별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55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22. 11. 15.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. 5. 14.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나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다272046 판결 참조).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,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,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,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,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다83100 판결 참조).

이 사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,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6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나, 이 사건

매매계약 체결 후 4년 이상 경과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2022. 10. 18.에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, ② 원고가 2023. 4. 27. 소외 회사 대신 이 사건 대출금 485,470,185원을 변제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,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영천시 G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, 2020. 9. 23. 16억 원에 이를 매도한 점, ④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모두 그 발생일자가 2022. 11. 17.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
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운

별지